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99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1일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동길, 권순선, 권영희,  
김소영, 김제리, 김호평,  
오현정, 이동현, 홍성룡 의원  
(9명)

## 1. 제안이유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고, 때로는 성폭력 등이 은폐·축소되어 피해 예술인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나타남. 한편, 「예술인 복지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2019년 1월 17일 시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예술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시장의 책무)제2항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곤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시장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